2016년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2016년 11월 29일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사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창립 초기부터 악법개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입법감시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2008년부터는 매년 정기국회 일정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과 저지되어야 할 법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는 민변 산하 상설기구인 입법감시태스크포스의 주도하에 민변 내의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평소 각 분야에서 연구하고 모색해 온 결과를 취합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각 위원회는 노동, 여성, 사법, 소수자, 과거사 청산 등 한국사회에서의 주요한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들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고, 입법감시태스크포스는 최종적으로 14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65개 법률안을 선정하여 각 법률안에 대해 '입법 적극저지'와 '입법 적극촉구' 방식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입법 적극촉구'법안 중 일부에는 '수정 보완의견'을 부기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20대 국회는 지난 몇 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기대가 담긴 총선결과를 통해서 출발하였습니다. 민변은 20대 국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아 6월에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20대 국회 개원이후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9대에서 저지되었던 악법들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법률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 정기국회는 파행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 퇴락이 바로 최고 행정수반에 의하여 헌정질서가 파괴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로 이 시점에서 스스로 정당성을 결여하게 된 행정수반을 대신하여,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회가 주어진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은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헌정질서가 파괴된 절망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근심과 분노가 '백만촛불'로 나

타난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와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여전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며 일상을 소중히 살아가고자 하는 이웃들을 만났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 국회가 소중히 담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변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전진하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 촉구 및 악법 저지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 1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차>

I. 2016년 정기국회 민변 핵심법안 목록표 ——— 7

II.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
1.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0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안) 11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안) 12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5.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14

III. 국회운영위원회 16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IV. 기획재정위원회 17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8
3.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9

V.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3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VI.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6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6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7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VII. 법제사법위원회 34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4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인의원안) 35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안) 37

4. 약칭 '공수처'법률안 38
5. 징벌적 배상법안 40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안) 41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안) 42

VIII. 보건복지위원회 44
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44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6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47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48
6.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49
7.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50

IX.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2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안) 52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안) 53
3.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54

X. 안전행정위원회 56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안) 56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 박주민의원안) 58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안) 59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안) 61
5.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63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5
7.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66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67
9.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68
1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69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71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71

XI. 여성가족위원회 73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3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4
3. 약칭'스토킹 처벌법'법률안 74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7

XII. 외교통일위원회 79
1.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79

XIII. 정무위원회 80
1.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80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XIV. 정보위원회 83
1.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83

XV. 환경노동위원회 85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안) 85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안) 86
3.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등) 87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안) 88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90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 확대) 92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93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안) 95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안) 96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7

I. 2016년 정기국회 민변 핵심법안 목록

1. 민변의 정기국회 핵심법안 선정활동

민변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 2009년에는 10개 민생법안, 2010년 30개 법률안, 2011년에는 50개 법률안, 2013년에는 60개 법률안, 2014년에는 43개 핵심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입법촉구와 입법반대 법안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10개 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정기국회에서는 총 54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16년 제 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3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언론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디지털정보위원회)와 3개의 TF(입법감시TF, 세월호TF, 정치관계법개혁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총 65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민변 선정 65개 법률안 목록

입법 적극촉구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 의원 발의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 이용주 · 김종회 의원 발의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 의원 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 박주민 의원 발의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의원 발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 설훈 의원 발의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 의원 발의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13.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 ·

입법 적극촉구	윤후덕 · 송옥주 의원 발의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 이인영 · 노회찬 · 윤종오 의원 발의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 확대) / 한정애 의원 발의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김삼화 · 권미혁 의원 발의 17.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홍익표 의원 발의 18.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 의원 발의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 의원 발의 2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 의원 발의 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 노회찬 의원 발의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 의원 발의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해·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 전면금지 등) / 한정애 의원 발의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인 의원 발의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의원 발의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32. 약칭 ‘스토킹 처벌법’ 법률안 / 남인순 · 김정훈 · 정춘숙 · 김삼화 의원 발의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의원 발의 34. 약칭 ‘공수처’법률안 / 박범계 · 이용주 · 노회찬 의원 발의 35.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 표창원 의원 발의 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 권미혁 의원 발의 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 의원 발의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민 의원 발의

입법 적극촉구	3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 의원 발의 40.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김해영 의원 발의 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 의원 발의 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45.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 우원식 의원 발의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47.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 오영훈 의원 발의 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 의원 발의 49. 징벌적 배상법안 / 박영선 의원 발의 50.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5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5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 의원 발의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 의원 발의
입법 적극저지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 의원 발의 2.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 이철우 의원 발의 3.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 김광림 의원 발의 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김승희 의원 발의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 의원 발의 6.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정부 발의 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이명수 의원 발의 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승희 의원 발의 9.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학재 의원 발의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발의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00359)
소관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자	2016. 6. 20.
대표발의	정부발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은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정부 입법안은 정부는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동 입법안은 요존 국유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공익용 산지등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여 공공재로서 각종 보호지역과 산지를 사실상 사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개발대상 산지가 핵심구역이 아닌 완충구역에 해당된다고는 하나,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보전과 서식지 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으로 완충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자행될 경우, 기존의 산림보호체계를 위해 노력해 왔던 성과가 일거에 무력화될 수 있을 것임

○ 동 법률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내 토지 소유자들이 산악관광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였을 때 해당 조합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산지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산악관광개발에 대한 개발이익실현을 위해 개발을 유도하고 있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음

○ 동 법률안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 27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익보호장치로서 인허가제도를 의제처

리하고 있어 개발과 보존사이의 이익형량을 형식화하여 개발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25)
소관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자	2016.6.7.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만 3~5세 누리과정이 더 이상 사회적 논쟁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누리과정 재정 부담의 주체를 국가로 하자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만 3세~5세 사이의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을, 유치원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의 가정과의 거리, 유치원 입학 추첨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임. 만3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보육사업에 대해, 유아교육은 교육부, 영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가 각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법제도하에서 영유아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동등하게 교육받지 못하고 유아교육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될 염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에 대한 제도적 통합을 위하여,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누리과정이 실시됨.

○ 그러나 누리과정은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타당성 및 지방교육재정 고갈의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보육을 위하여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01387)
소관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자	2016.8.3.
대표발의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유치원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 유아에게 도구·신체를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의2제2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됨.

○ 현행법 제21조의2 제2항은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률안은 위 조항 후단에 도구 및 신체를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더하여 고성·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1조의2 제2항)

○ 법률안은 유아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성이나 폭언을 하는 것도 유아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아동학대 행위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이를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 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1403)
소관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자	2016.8.4.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 당사자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선거 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의 하향이 필요함. ▪ 이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9조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과거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어, 지방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교육정책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적 기반이 취약하였음. 따라서 교육감선거가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어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었음.

○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본질적인 교육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에 청소년들은 허덕이고 있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교육 아닌 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에 지치고 불행을 느끼며, 그 속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함.

○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청소년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이나 교육 정책에 전혀 참여할 수 없음.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 정치 활동, 선거운동 등도 금지되어 있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는 학교에서나 교육계에서나 사회 어디에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교육을 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선거는 결국 어른들이 원하는 정책을 강요받도록 하여 교육의 진정성을 떨어뜨리고,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교육당사자가 아닌 성인인 유권자들은 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그러나 그 책임은 고스란히 청소년들의 몫이 됨. 청소년들은 교육제도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그 관심도 상당히 높음.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반장선거, 학생회장선거 등을 통해 선거과정에 오래도록 참여해왔고, 교육을 통해서 선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감수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청소년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투표한 한표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한층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

○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가 된다면 이는 전체의 유권자 중에서 약 5.6% 정도가 됨.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한 숫자이나, 진정성있는 교육제도 마련과 선거제도의 긍정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기대됨.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 위 일부개정법률안

과 같은 내용으로 입법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 기준을 16세로 낮추는 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01403)에 적극 찬성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5.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2002580)
소관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자	2016. 10. 5.
대표발의	오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이 법은 국가가 지방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7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출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운영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역의 운영 지원, 교육기관의 석면제품 제거 및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지방교육정책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사업의 운영 지원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 등으로 함(안 제4조). ▪ 교육부장관은 시·도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하고 사업별 지원 예정금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 이 법은 시행일이 2017년 1월 1일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정부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평균 8.8%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39.4조원에 그침으로써 연간 약 4조원에 이르는 누

리과정은 심각한 지방재정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음.

- O 누리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4년간 지속되었는데, 2016년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육감들과 예산 편성을 강제하려는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의 다툼이 극에 달하였으며, 그 해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제안됨.
- O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리과정 등 초중고 교육 예산 마련을 위하여 현재 내국세의 21.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율을 최대 25%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들을 제안하였다. {설 훈(16.06.02) 김태년(16.06.02) 오제세(16.06.03)권칠승(16.06.08) 박홍근(16.06.23) 유은혜(16.06.24) 김민기(16.07.08)
- O 새누리당에서는 한선교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율은 현재 21.27%를 유지하면서 누리과정비용지원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취지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을 제안하였으며, 정부는 위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2017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
- O 더불어민주당에서 2016. 10. 5.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입법촉구법안)을 제출하였는데, 새누리당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7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누리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등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지방교육정책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사업의 운영 지원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 등으로 하는 것이다. (내국세 총액의 21.27%인 지방재정교부금에 내국세 총액의 2.73%인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 특별회계를 추가)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이 법은 시행일이 2017년 1월 1일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시법이라는 것인데, 새롭게 변화해온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입법과 예산안 등이 정비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등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 때문임
- O 누리과정비용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상치에 못 미쳐서 연간 약 4조원에 이르는 누리과정은 심각한 지방재정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 입법촉구법안은 타당하다.
- O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수요 측정항목과 산정 방식이 실제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며 누리과정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시정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입법과 예산안 등이 정비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등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 입법촉구법안은 타당하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Ⅲ.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81)
소관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관련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3.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성인지결산서의 심사결과에 따라서도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84조제2항). ▪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4조의5제1항 신설).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보받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심사결과 내용을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84조의5제2항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상 예산 및 결산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여 소관 상임위별 심사는 대부분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고 심사 결과에 대한 대응 및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성인지정책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그 심사 결과를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 성인지결산서의 심사 결과가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가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Ⅳ. 기획재정위원회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기업 법인세 및 고소득측 소득세 인상)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28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3132)
소관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06. 16. 2016. 10. 31.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노회찬(정의당)
주요내용	▪ (박주민)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25%로 조정함(안 제55조 제1항). ▪ (노회찬)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3%, 20%, 25%로 조정함(안 제55조 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가중평균)은 24.2%로 OECD 평균보다 1.3% 포인트 낮고,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음.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최근 기업소득의 비중이 늘어가고 가계소득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세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법인세수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음.

○ 정부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유인을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유로 감세 정책을 실시한 것임. 그러나 부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고,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증가하고 고용 창출은 미미했음. 따라서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2000027)
소관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5. 30.
대표발의	이명수 (새누리당)
주요내용	▪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함.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안 제14조 및 제15조) ▪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8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제19대 국회 기간에서 논란이 되었던 의료영리화법으로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기재부장관이 중심이 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개선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 교육, 방송통신,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각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에게 월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

○ 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사실상 기재부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함.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은 근본적 이유는 대기업 중심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계층이 자영업종으로 진출하여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양극화 심화와 가계소득 감소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과 재벌규제로 대기업 중심경제를 개혁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선과 중소상공인 보호로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임.

○ 동 기본법안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의 논란을 이유로 폐기된 법안이므로, 다시 발의될 이유가 없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000026)
소관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5. 30.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주요내용	▪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 규제프리존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3조). ▪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음(안 제15조). ▪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36조) ▪ 규제프리존 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역내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39조).

	▪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40조 제1항) ▪ 규제프리존 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음(안 제41조). ▪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43조). ▪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안 제76조). ▪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안 제85조). ▪ 규제프리존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에 필요한 입주수요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 사무국을 둠(안 제91조). 도.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92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좌절되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을 끼워 넣어 시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 버전임.

○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 생명과 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업실증특례'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점을 실증한 경우,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기업이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한 경우에서 보듯, 눈앞의 투자이익에 급급한 기업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한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환경, 정보인권 등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의 폐해는 순식간에 모든 국민

에게 돌아갈 수 있음.

-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나, 동법안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스럽고, 정부 발표 자료만으로는 기대효과가 지극히 추상적일 뿐임.
-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네거티브방식, 즉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안 제4조), 환경, 토지, 경제, 의료,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완호에 해당하고, 허용/불허의 범위가 불투명하여 자의적인 해석 및 임의적 행정재량이 지나치게 커지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 개발실패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게 되는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이는 곧 기업의 자유란 명목 아래 이를 제어해야 할 행정기능의 상실을 의미함. 최근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의 참사가 무분별하게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임.
-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가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라 다른 법령이 배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안 제19조) 이는 곧 기재부장관에게 다른 부처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부당하고, 기재부장관의 경제정책만으로 공공서비스가 민영화·영리화 될 수 있는 왜곡된 정책 결정 구조를 초래하게 됨.
-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는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 부여의 큰 권한을 갖게 되는데, 기재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장관 및 정무직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되며, 기재부장관인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민간위원이 되는 구조로서, 근본적으로 기재부에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바, 공정성이 결여됨.(안 제9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부당한 정경유착을 유발할 수 있음. (안 제33조)
- 동 특별법안은 일반특례로서 특허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출입국관리법, 공정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의료기기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전략산업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것에 다름 아님. 특히 국공유재산의 민간매극 특혜도 모자라 개발이익부담금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저가로 매입한 민간업체에 대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부동산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고, 졸속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우려가 매우 높음.
- 동 특별법안은 개별특례로서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의료영리화 문제임. 의료영리화의 문제로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동 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임. 또한 동 특별법안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오로지 지역산업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거의 지자체장의 결정만으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침해될 것임. 그 외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인한 건전한 학습환경 훼손,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및 계열사 제외 특혜, GMO의 졸속 검증으로 인한 국민안전성 위협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음.
-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산업적 목적을 위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제한적으

로 특정 지역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특별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임.

- 동의 없는 정보수집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비식별화'임.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임. 이런 데이터의 변조를 통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임.
- 하지만 이미 대규모 유출이 이루어진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된 데이터와 결합하면 해당 정보의 주인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가 반드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
-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바, 이런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음 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자가 되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105, 한정애 의원)처럼, 원청사업주에게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책임을 직접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국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영리화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디지털정보위원회

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0114)
소관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일자	2016. 6. 7.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법 목적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및 제7조의2). ▪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도록 함(안 제6조). ▪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9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위원회 활동기간 명문화 및 활동기간의 특례>

○ 현행법은 제7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 법문상 ‘그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으며, 정부는 이를 현행법의 시행일인 2015.1.1.이라고 해석하여 지난 6월 30일로 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고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음. 그러나 특별법 시행일인 2015.1.1.에는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등 아무런 물적·인적 자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음.

○ 개정안은 제7조제1항 본문 중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를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선체 인양 후 인양 된 선체의 정밀 조사를 위하여 의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안

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 제2기 특조위를 위한 제정안>

○ 현행법에 따른 특조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개정안이 통과 된다고 하여도 조사관 등 인력 및 조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새로이 특조위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한 별도의 제정안이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세월호TF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0114)
소관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일자	2016. 6. 20.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및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보며, 희생자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희생자 및 피해자 범위 확대>

○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구조 및 수습 활동을 수행하다가 2명의 민간 잠수사와 5명의 소방 공무원이 사망하였으며, 구조 및 수습 활동 중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 등은 잠수병 등 각종 신체적 부상 혹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희생자 및 피해자의 범위를 참사 당시 세월호에 탑승해 있던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구제에 소홀함.

○ 이에 개정안은 제2조에서 희생자에 참사 관련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고, 피해자를 참사 관련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등에까지 확대함.

○ 개정안은 국가의 과실로 인하여 혹은 국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참사 수습을 위한 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까지 입법 정책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충분히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의료지원금 및 검사, 치료비 등의 지원 연장>

○ 현행법과 시행령(제19조 및 제21조)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을 2016.3.28.(법률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제한하고, 심리·정신 검사 치료비를 2020.3.28.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부상은 기간을 정해 두고 낫도록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국가의 구조 실패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며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개정안은 제23조와 제25조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국가의 책임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는 것임.

<의사상자 및 순직공무원 의제>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민간잠수사가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은 정교사와 달리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9조의 2를 신설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와 자원봉사자는 같은 법에 따른 의상자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희생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각각 보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잠수사 및 기가제 교원을 의사자 또는 순직 공무원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적절한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개정안은 세월호 피해자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치료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촉구의견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세월호TF

Ⅵ.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1022)
소관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21.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촉구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4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검토 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안임.

<보완 내용 : 이사의 자격 요건>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신분보장과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 있음.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

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언론위원회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1021)
소관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21.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 제2항 및 제3항). ▪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촉구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검토 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는데 본 법률안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됨

<보완 내용 : 이사의 자격 요건>

○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신분보장과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 있음(안 제47조제4항 및 제48조제1항).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언론위원회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1027)
소관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21.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1021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감당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 및 통신의 규제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언론위원회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2618)
소관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6. 10. 11.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및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6까지 등).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황

2016년 상반기 동안에만 4,480,266 건의 통신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음. 연간으로 확대하면 5천 만 인구 국가에서 9백만 건에 달함

포털사들이 통신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해 볼 때 주로 유선전화, 이동통신, 게임회사 등에서 제공되었을 이 수치는 많아도 너무 많음

정보·수사기관의 감시 대상자와 통화를 한 모든 통화상대방의 신원을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대안으로서의 사법적 통제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2213)
소관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6. 9. 7.
대표발의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공고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그동안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범죄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는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었음.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만이라도 비범죄화를 이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견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

한 대상 문제만이라도 선차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음.

○ 한 편 이명박 정권 내지 박근혜 정권 들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에서의 표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임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가 이어진바 있음. 따라서 법안과 같이 명예훼손이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취지이고, 표현의 자유와 균형적 조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친고죄로 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20)
소관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21.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6항단서 신설). ▪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검토 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보완 내용 : 이사의 자격 요건>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신분보장과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 있음.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언론위원회

Ⅶ. 법제사법위원회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01801)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01957)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02536)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8. 25. (2) 2016. 8. 30. (3) 2016. 9. 30.
대표발의	(1) 노회찬(정의당) (2) 이용주(국민의당) (3) 김종회(국민의당)
주요내용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01801) ▪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01957) ▪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로 임용을 금지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을 금지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02536) ▪ 대통령실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검사로의 재임용을 금지(안제33조제4호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직 검사가 퇴직 후 곧바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그 근무를 마치면 다시 바로 검사로 복직하는 사실상의 파견 근무가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은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고,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함.

○ 실제로 검찰 간부 출신의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사실상의 파견검사들을 지휘하여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편법 파견을 실효성 있게 금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들과 같이, 검사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실 근무를 금지하고, 대통령실 근무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검사 재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00645)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4.
대표발의	김종인(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6조의 2 신설 및 제542조의 6 제6항) ▪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함(안 제403조 및 제404조) ▪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 7) ▪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하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안 제542조의8). ▪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안 제542조의12).

	▪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현재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현행상법 제342조의 2에 따른 모자회사관계(지분률 50% 초과)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계열회사 출자구조가 매우 복잡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현황을 감안할 때 실효성에 의문.

○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한 주주대표소송의 절차 개선안은 의미가 있음.

○ 집중투표 의무화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라는 제한을 둔 것은 오히려 비상장회사가 복잡한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경우가 있고,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집중토표제의 목적에 비추어 한계로 보임. 모든 회사로 집중투표제를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542조의 8(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제4항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하여 위 법안 제542조의 8(사외이사의 선임) 제4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위 규정이 이사들 중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모든 상장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 개정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법 위반의 경우가 생길 수 있고, ② 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상법 제393조의 2(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른 위원회 규정(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과 충돌하게 되고,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독립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오히려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제6항 :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의 요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주총회에 상정한 후보 중 1인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후보 중 1인이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의결방법에 대하여 절차적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② 주주총회의결방법을 보완하더라도 주주들의 결정권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감사위원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분리선출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바, 의결권제한과 관련한 현행상법 실효성 확보에 의미가 있음. 다만 재계의 강력 반대로 의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우려

○ 최대한 많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자투표의 단계적 도입은 유의미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02091)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6. 9. 2.
대표발의	노회찬(정의당)
주요내용	▪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01조제1항). ▪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추가하여 남소를 방지함(안 제402조). ▪ 과반수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역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3조 제1항). ▪ 특정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회사”의 주주 역시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피지배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함. 이 때 지배회사란 피지배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사실상 피지배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함(안 제406조의2). ▪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도록 하며, 제466조의 회계장부열람권의 범위를 피지배회사로 확대함(안 제406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466조). ▪ 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400조제2항을 삭제하고, 다만 현행 판례와 같이 법원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9조 및 제400조제2항). ▪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함(안 제542조의8).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

	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며(안 제542조의12),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안 제542조의7),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O 현재 판례에 따르면, 대표소송의 원고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증거는 대개 회사 내부에 존재하므로, 현재로서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한편으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상 입증책임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함.
- O 현재의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에 비추어, ①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함, 남소우려에 대한 방치책으로 '6개월 이상 보유요건'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임(안 402조), ②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는 주주가 아닌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누구보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점에서 긍정적임.
- O 다중대표소송의 도입과 관련하여, ① 단순 모자관계 회사(지분률 50% 초과)에 그치지 않고 지분률을 30%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 규정한 것, ②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부여한 것은 긍정적임.
- O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402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이념을 확인하고, 대신 법원이 감경할 여지를 둔 것은 손해분담 공평의 견지에도 부합함.
- O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1인을 사외이사의 선임하는 것은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준법감시의 점에서 긍정적임.
- O 그 외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이사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의 도입, 전자투표 등의 실시 의무화 규정 역시 이사회를 견제하고 주주총회의 실질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4. 약칭 '공수처'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01461)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2001057)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8. 8. (2) 2016. 7. 21.
대표발의	(1)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2) 노회찬(정의당)
주요내용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01461)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둠(안 제3조) ▪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안 제18조) ▪ 수사처에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둠(안 제20조)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2001057) ▪ 수사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매년 국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토록 함(안 제23조) ▪ 수사처에서 퇴직한 자는 3년간 일정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2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함(안 제11조) ▪ 고소·고발인 및 수사의뢰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함(안 제22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반복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관한 검찰의 편파·축소·은폐 수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표적·과잉수사 및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그리고 전관예우 등 특혜와 반칙에 근거한 법조비리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음.

○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 체계의 검찰은 집권층을 위해 또는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 권한을 왜곡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음. 검찰과 법원 등 법조 내부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찰 및 검찰에 의한 수사의 한계로 인해 법조, 특히 검찰 개혁 차원에서도 독립적 기구의 설치가 요청됨.

○ 국회의 인사청문에서 나아가 국회 동의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은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했고, 노회찬 의원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현행 헌법 및

법률상 국회의 동의 대상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정도라는 점, 추천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장을 굳이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O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의 경우 처장이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 및 공소기관의 장인 처장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변호사의 자격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O 수사권 발동 사유로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을 때'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은 고소·고발을 수사권 발동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수처 설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불기소심사위원회의 경우 오히려 공수처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왜곡할 위험이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5. 징벌적 배상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징벌적 배상법안(2000283)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6. 6. 16.
대표발의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6조) ▪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 징벌적 배상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징벌적 배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3조) ▪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불법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불법행위가 피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함(안 제17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우리사회에서는 다중대한 악의적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이를 실효적으로 억지 및 제재할 민사적 수단이 없었음. 위자료 증액이나 과실상계 배제와 같은 수단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인 전보배상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음.
○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제7조에서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징벌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배수배상과 같은 한도를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함.
○ 실손해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보다 몇 배의 징벌배상을 명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있는 재발방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향후 재판실무가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징벌배상액 산정에 관한 기준이 정립될 것임.
○ 한편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것은 피해자의 관할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2402)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0339)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9. 22. (2) 2016. 6. 20.
대표발의	(1) 금태섭(더불어민주당) (2)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2402)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0339) ▪ 피의자 신문 시 의도적인 신문 방해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외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243조의2 제1항)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제34조의 접견·교통·수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3조의2제4항 및 제7항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강력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음. 이로 인해 자백위주의 수사 관행 및 강압수사가 조장되고,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옴.

○ 2005년 사법개혁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애초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같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위 방안은 검찰의 반발과 법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을 완화하여 즉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서재판의 억제와 구두변론주의의 활성화를 통한 공판중심적 형사재판의 정착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음.

○ 그러므로 위 개정안과 같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 요건을 강화하여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피의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피의자를 조력할 수 있어야 함. 나아가 변호인의 참여는 수사과정에서의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요청됨.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아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89)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6. 10. 6.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ㅇ 약식명령은 검찰에서 거의 대부분 경찰송치기록만 검토하여 이를 청구하고 법관도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이를 발부하고 있어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은 법관의 면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정식재판청구는 이러한 약식명령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의미를 가지나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되기 전에는 정식재판청구율은 1%대에 불과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음. 심지어 법원이 불이익변경을 무기로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폐단도 있었음.
- ㅇ 정식재판청구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이래 정식재판청구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11.6%에 달하게 되자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고 있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본 개정안은 그러한 주장을 입법화한 것임.
- ㅇ 그러나 위와 같은 폐지 주장은 상고법원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이해관계보다는 업무경감과 간이한 사건처리라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치중한 것임.
- ㅇ 정식재판청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형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바, 약식절차에서는 검찰의 자료만이 법원에 제출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 ㅇ 영업범의 경우 형의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유형의 사건은 검찰이 처음부터 정식으로 기소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지 이를 막기 위하여 아예 정식재판청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자체를 폐지할 것은 아님.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Ⅷ. 보건복지위원회

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2002466)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관련: 법사위, 외통위)
제안일자	2016. 9. 23.
대표발의	김승희(새누리당)
주요내용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시행 전, 현재 우리나라 입양절차가 민간 주도형인 점,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입양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점, 국제결혼의 증가로 전혼자 입양 등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인 국제입양기준 마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국제입양법’ 제정안 중 적용범위(안 제3조) 의 경우,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한쪽 또는 양쪽의 국적이 다른 경우. 다만,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호) 라고 하여, 협약이 ‘국적’이 아닌 ‘상거소’가 다른 국가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이국적자간 입양의 경우에도 상거소가 같은 경우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난다고 규정(석광현, 이병화 2009, p.21)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이는 제정 이유와 같이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외국 국적 아동을 한국국적자가 입양하는 사례에서 ‘국내입양법’이 아닌 ‘국제입양법’으로 규율함에 따라 출신국의 권한 있는 승인 등의 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입양과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함으로써(안 제5조 제2항), 비영리 운영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헤이그협약 제11조에 반함.

○ 해외 입양 쿼터를 축소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아동보호시설에서 해외로의 입양을 중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해 국제입양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방법으로, 입양특례법상 필요 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 국제입양법의 제정안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의 규정, 입양 비용 징수 규정의 문제, 정부의 국외로의 입양 감소 정책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0141)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00675)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1) 2016.6.8. (2) 2016.7.5
대표발의	(1) 윤소하(정의당) (2) 설훈(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0141) ▪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 ▪ 이 경우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안 제51조의2).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00675) ▪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1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1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임.

○ 국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아동이 도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1)]

○ 아동의 건강에 직결되는 병원진료에 있어서 국가가 공공의료로서 접근하여 그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만 1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부터 국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공공의료의 보장성 강화의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임.

---

1)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법률안과 같이 “입원진료비”에 한정하여 전액 국가부담으로 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만성질환자 중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형평성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입원을 선호하게 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향후 “입원진료비”뿐만 아니라 적어도 의무교육의 대상인 “만 16세미만 아동”의 의료비의 경우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01836)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26.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 정의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5호 삭제).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의 정보 조사 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2제1항·제2항). ▪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후 비용징수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46조제1항 삭제).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가 빈곤층의 인가다운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신청자 3명 중 2명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3 이유로 탈락했음.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가구는 4명

중 1명보다 적은 24.38%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더 절약해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답하였음.

- O 현행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한다는 것을 소명해야 수급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권을 위해 가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음.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고 하여 수급권을 가진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간주부양비를 급여에서 삭감하고 있어서 더 많은 급여를 위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연락을 끊어야 하는 비인도적 결과를 낳고 있음.
- O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적은 부양의무자가 더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다보니 정작 자신도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는 가나의 대물림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등이 자립생활을 하는데에 방해 요인이 되고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 O 본 법률안과 함께 2016. 8. 26.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001843)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위 주거급여법도 입법 적극촉구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GMO 표시제도의 확대)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01603)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16.
대표발의	윤소하(정의당)
주요내용	▪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이하 'GMO')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잔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1항). ▪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원재료 중 GMO 원재료 비율이 1천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5, 제13조 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한국에서 GMO를 원재료로 하는 식품으로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은 식용유, 장류 등 대부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이고, 현행 법률에 따라 이들 식품에는 GMO 표시가 되지 않음. 따라서 한국은 GMO의 최대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은 GMO 표시를 사실상 볼 수 없는 상황임.

○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소비자생협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무유전자변형식품(non-GMO) 또는 비유전자변형식품(GMO-free) 등의 표시를 하고자 하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표시를 허용하는 근거 법률이 없는 만큼 이러한 표시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더 나아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시를 2016. 4. 21. 입법예고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시민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식품이 GMO를 원재료로 하였는지 또는 GMO가 아닌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였는지 그 어느 쪽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

○ 위 개정법안은, 위 2가지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GMO를 원재료로 하는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검출 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 기반 표시제'로의 변경), 둘째 GMO를 원재료로 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EU, 호주, 대만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비의도적 혼입치 0.9% 인정하고 있음.

○ 한편, 위 법안의 경쟁 입법안으로는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 6. 20.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364)이 있는바, 김현권안은 '원재료 기반 표시제'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윤소하안과 동일하고,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하여 무(無)유전자변형식품과 비(非)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비의도적 혼입치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윤소하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두 안은 GMO 표시의 확대라는 점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안이 더 좋은 법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다만, 비의도적 혼입치에 대하여 식약처가 3%를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0.9%를 명시한 윤소하안을 입법 촉구 법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2001506)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6.8.9.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재정 부담 주체를 국가로 하자는 것임.

○ 현행법은 영유아의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대하여 일부는 국가가,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0~2세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지만 만 3~5세(한국나이 5~7세)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간 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해 영유아의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며,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영유아의 경우 매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중단, 어린이집 파업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학부모와 영유아는 안정적으로 보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정부가 출생률의 저하가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현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공약에 의한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함.

○ 영유아들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및 양육 환경을 위하여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의 국가 전담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6.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2002467)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6.9.23
대표발의	김승희(새누리당)
주요내용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행에 대비하여, 현재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절차에서 국가 ·지자체의 관여·책임 강화 ▪ 지자체 장이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입양을 진행 ▪ 입양 신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 적합성 보고서 작성

	▪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인‘중앙입양원’의 설립 규정 신설로 특수법인화 ▪ 입양기관에 대해 지자체장 허가 요건 신설 및 국가위탁사업 수행을 가능케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우리나라는 2013. 5. 24.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함. 동 협약은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천명하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 가능한 가정을 찾고, 국제입양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을 원칙으로 선언함. 또한 권한 있는 당국(공적 기관)에 의해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고, 국내에서의 보호 절차를 모두 검토한 후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했을 때에만 국제입양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 협약 제4조 a, b). 본 개정안은 협약에 따라 입양절차에 공적인 개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

○ 안 제8조는 시·도지사 등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양자가 될 자격을 심사(입양 적격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입양 적격 심사의 기초가 되는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에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적 개입의 취지가 형해화 됨(안 제39조 제3항) 이는 결국 입양 적격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입양기관이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인 결재권자로만 남게 되어, 입양기관에게 전권이 부여되어 있는 현재의 입양 시스템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함.

○ 최근 대구 입양아동 학대·뇌사 사건의 경우, 입양기관(성가정입양원)이 법원에서 입양 허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예비입양가정에 아동을 불법적으로 ‘입양체험’을 보냈다가 7개월 만에 아동이 뇌사에 빠짐.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게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과 심사, 입양의뢰된 아동의 보호,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모든 절차를 일임한 결과 대안가정인 입양가정에서 아동이 학대받고 뇌사 판정을 받게 됨. 두 법 제·개정안은 이러한 실태를 바꾸지는 못함

○ 입양기관에 운영경비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안 제25조 제6항)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함으로써(안 제5조 제2항), 비영리 운영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헤이그협약 제11조에 반할 위험이 있음.

○ 입양기관에 입양 절차의 일부를 위임하고,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하는 반면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찾을 수 없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7.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1645)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18.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함. ▪ 학대피해노인 상담, 구조,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를 규정함.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사후 보호, 학대피해 재발 예방 등을 규정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포함)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피해노인을 구조하고 지원하는 법률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노인복지법”에 학대피해노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학대 예방, 재발방지 등 학대피해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위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학대피해노인의 신고접수와 상담 업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긴급한 구조 지원 등을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나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과 임시보호 등을 위하여 상담소와 쉼터를 운영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학대피해노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학대피해노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지속적·다각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므로 입법 적극 촉구 의견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048)
소관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일자	2016. 05. 30.
대표발의	백재현(더불어 민주당)
주요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제7호 신설) ▪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1년 내 적합업종 합의도출에 실패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안 제20조의3 신설). ▪ 현행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사업조정심의회로 변경하고, 이 조정심의회는 위 나.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되,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내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함(안 제32조 제7항). ▪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전부·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진입자제 등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2항). ▪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상향조정(안 제41조, 43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상생법 상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의 도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 일정기간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당장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법 개정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673)
소관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5.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주요내용	▪ 이익개선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업종·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안 제30조 신설). ▪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함(제10조 제2호 삭제)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제8조 1항 전단에서 ‘수탁기업이 원가 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제적 현실에다가 수요 독점적 시장구조상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행하는 상황에서 성과공유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적합업종 합의 도출은 자율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상생협력 모델의 법제화가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2000077)
소관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일자	2016. 06. 02.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제정법률(안 제1조)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안 제5조)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 등을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고(안 제6조),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며(안 제7조), 지정·고시된 적합업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없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는 형사처벌 함(안 제13조). ▪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금융·세제 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적합업종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적합업종지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으로 통일함(안 부칙 제3조).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11조).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9조 및 제63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이 제도는 정부 보호 속에서 안주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하여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2006년에 폐지.

○ 그러나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기업총수의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하거나 일감몰아주기를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심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 선정이 강제성 없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도 동반성장위원회 조직 자체의 존립부터가 불투명한 전망임.

○ 따라서 이 법률안과 같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함이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Ⅹ. 안전행정위원회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2173)
소관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9. 6.
대표발의	윤소하(정의당)
주요내용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하도록 함(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60조제1항) ▪ 기탁금의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경제적 차이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함(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제58조제1항). ▪ 광범위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를 완화하여 투표율 향상을 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제58조의2).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제82조의6). ▪ 선거 180일 전부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제93조제1항).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호별방문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로 한정하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7조). ▪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근로자들이 고용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투표를 하도록 보장하고자 함(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선거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음(헌재 2009. 3. 26. 2006헌마526 등 참조).

- 민변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75p~109p) 등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 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의 문제점은 최근 검찰이 2016. 4.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다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현실화되었음.
-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질서의 유지를 위한 규제는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같은 가치이지,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다."{현재 2014. 4. 24. 2011헌바17, 2012헌바391(병합), 재판관 3인 반대의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음.
- 개정안은 제58조(정의 등) 제1항 본문에서 현행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구체적·계획적 행위"로 규정하도록 함(밑줄 부분 추가)으로써, 선거운동의 범위를 '직접적, 구체적, 계획적 행위'로 한정하고,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 "정책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제7호), "관계 기관장에 대한 청원 및 이와 관련한 행위"(제8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 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제9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3. 6. 국회에 제출한 개정 의견에서 "주관적 요건을 축소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만을 규제하되, 많은 비용이 들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고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개정안과 같이 현행 제93조 제1항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조항의 삭제로 우려되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행위만을 규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 개정안은 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허용되지 않는 유형을 최소화하고(개정안 제58조의 2),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실명확인제(제82조의 6)의 폐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규정(제90조)의 적용 시한 축소,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범위 최소화(제91조 제3항), 기타 금지 규정{연설회 금지(제01조), 각종 집회 제한(제103조), 행렬 등의 금지(제105조), 서명·날인 운동의 금지(제107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개정안의 규정들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음.

<기탁금 하향 조정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의 확대>

- 국회의원 선거 등에 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한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을 지나치게 고액으로 규정하는 경우, 자력이 부족한 사람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기회가 박탈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피선거권 행사의 침해 우려가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 상 기탁금의 액수는 여전

히 높은 편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낮추어 규정함으로써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선거비용 보전의 요건도 완화함으로써 피선거권이 후보자의 자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제56조(기탁금)와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가 규정하는 기탁금의 액수 및 기탁금 반환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바, 후보자의 자력 부족으로 인한 입후보 제한,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탁금 반환 규정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

○ 개정안은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근로자들이 고용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투표를 하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바(개정안 제15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 윤영시간 연장은 근로자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입법 촉구 의견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정치관계법개혁TF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1579)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2315)
소관상임위	(1) 안전행정위원회 (2)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8. 12. (2) 2016. 9. 19.
대표발의	(1) 유승희(더민주당) (2)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공직선거법(2001579)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3조 삭제).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함(안 제250조).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함(안 제251조 삭제). (2) 공직선거법(2002315)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안 제58조 및 제108조의2).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및 제251조 삭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규정함(안 제155조, 제176조, 제218조의16, 제218조의17 및 제218조의24).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0조제1항제1호).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개정안은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후보자 간 정책이나 공약의 비교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 제108조의 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 제한 등)를 삭제토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개정안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간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그에 따라 투표하는 정책선거 지향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은 후보자 비방죄 등 선거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그와 같은 처벌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거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정치관계법개혁TF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1404)
소관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4.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로 함(안 제60조제1항제2호).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안 제15조 제1항에 관해 (선거권 연령)>

-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쉽고 빠르게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임. 변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전통사회의 '성인'이나 '성숙'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선거권 연령의 기준을 삼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선거권 연령의 인하는 제한의 관점이 아니라 폭넓은 보장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18세는 713,978명, 17세는 708,614명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 4. 1. 기준 고등학교 3학년(총 1,920,087명) 중 18세는 42,591명, 17세는 635,644명, 16세는 650,217명인 것으로 나타남.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1세 하향할 경우, 선거일에 따라 유동적이겠지만, 해당자를 최대한 포함하더라도 위 통계상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고등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행 선거권 하한연령인 19세 미만자 모두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만큼 많다고 보기 어려움. 정치적 관심이 높아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정치에 할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그 부작용을 예단하기도 어려움. 무엇보다 현행 선거권 하한 연령(19세) 미만자 중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으며 성인으로 인정되는 시기인 대학생들에게까지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함.
- 민법에서는 성년을 19세로 정하고 있는바 독자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의 연령을 민법에서 19세로 정하였으므로 선거권 연령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나, 「병역법」 제8조는 제1국민역 편입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은 8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18세로 하한선을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제65조), 이들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제70조)이나 갱내근로 금지(제72조) 등을 명시하고,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은 직업소개 제한 등의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밖에 혼인적령(18세), 운전면허(18세), 주민등록 발급(17세), 유언가능(17세) 연령 등의 규정이 있음.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고 특히 병역의 의무를 18세부터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행 선거권 연령인 19세 이상자로 선거권 연령을 한정하여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피선거권 연령)>

- 공직선거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반면 피선거권은 헌법 규정사항인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제외하고는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이 불균형하게 설정되어 있음.
- 대의제의 원리상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자 집단과 피선거권자 집단이 동일하여야 함. 대의제 하에서 선거는 주권자 개개인의 '자기지배'가 '대표자에 의한 지배'로 전환되는 기점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통치자 집단과 피치자 집단이 구별되어서는 안 되며, 동질적인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서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자신이 피선거권을 지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없는 사건에서 선거권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는 자칫 '민주주의의 들러리'를 양산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설정하여 25세 미만의 국민을 선거의 객체로만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자들 스스로가 자신들 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기지배'적 체제를 유지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반하는 것임.

○ 독일 기본법상 선거권은 18세 이상인 국민에게 인정되고, 피선거권도 동일한 연령인 성년이 된 자에게 인정하고 있어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고 있어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게 입법을 하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2. 9. 고등학생 국회의원 아나 뤼어만이 선출되어 의회에서 활동한 바가 있음.

<안 제60조제1항제2호(선거운동 연령기준)>

○ 선거권에 선거운동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위에서 검토한 논의는 그대로 유효할 것이며,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고, 또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인정되는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고 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 의문인 점에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최소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선거운동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할 것임.

<소결>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 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01404)과 같은 내용으로 입법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임.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을 밝힘.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4.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70)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62)
소관상임위	(1) 안전행정위원회 (2)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8. 3. (2) 2016. 9. 2.
대표발의	(1)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2)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70)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47조제4항). ▪ 당헌, 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 정당이 제47조제5항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여성을 추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의 게재순위는 남성후보자보다 우선순위로 하되, 여성후보자 간의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8항 신설).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62) ▪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무효의 벌칙규정이 있으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음.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제52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로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여전히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자원 배분과 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들이 진입하여 여성의 생존과 복지를 결정짓는 정치 과정에 여성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

○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진 만큼 아직도 각종 여성 관련 지표에서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여성 할당에 대한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이나 장애인이 가산점을 받아 당내 경선에서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경우 일반 경선과는 다르게 경선탈락자의 해당 선거구 출마를 허용하는 법 해석을 내놓아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선관위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도 탈락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법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그 정당이 추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후보자들은 후순위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음. 따라서 여성후보자를

남성후보자보다 앞순위에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여성들이 받아온 불이익을 시정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의안번호2001370).

○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의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무효라는 벌칙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보다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훨씬 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권고조항에 불과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도 위반시 등록무효의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의안번호 2002062).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5.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2000688)
소관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6.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1975년 12월 1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 여부를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피해자 및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 ▪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 ▪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O 형제복지원에서 행해진 인권침해는 소위 부랑인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강제격리, 복지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감금(강제수용), 강제노동, 폭행, 상해, 성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치사(살인), 정신적 장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서 '아오지 탄광' 내지 '생지옥'에 다름 아니었음.
- O 소위 부랑인에 대한 수용의 근거는 1975.12.15. 내무부 훈령 제410호로 발령한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것이었는데, 훈령에 의하면 '일정한 정주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해하는 모든 부랑인'(제1장 제2절)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지어 '노변 행상, 빈 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들'을 준 부랑인으로 규정(제1장 제3절 제6호)하여 부랑인 대책에 준하는 단속조치를 하였다. 말하자면 이들은 제거되어야할 대상이었던 것임.
- O 복지원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훈령에 의한 체포, 강제격리, 강제수용은 당시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등 그 어떤 근거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오직 내무부 장관의 내부 업무지침인 '훈령'에 의한 것이었음. 그런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훈령'에 의한 체포·격리·구금 등은 당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이 명백하며, 물론 헌법이 인정한 제 권리를 구체화한 형법, 형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할 것임.
- O 신민당의 '부산형제복지원 신민당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형제복지원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체이며, 전체 예산의 80%를 국고 및 시비로 지원받고 있었'는데, '결산보고, 안전점검, 교육의 실효성, 원생에 대한 행정지도, 감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전혀 업무파악조차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예산 중 2년 동안 4억여원의 횡령한 사실을 보아도 '부산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음.
- O 따라서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당시 복지원에의 최소한의 체포·강제격리·강제수용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위반한 위헌·위법한 훈령에 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위헌. 위법적인 훈령에 근거한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복지원내에서의 감금·강제노동 그리고 폭행 등 가혹행위, 치사 등에 대서는 적어도 관리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임.
- O 따라서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속히 제청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2483)
소관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9. 27.
대표발의	이명수(새누리당)
주요내용	▪ 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동(關東)대지진 대학살을 포함하고, 한반도 내에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 ▪ 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함. ▪ 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위로금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존속기간 도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 이로 인해 한반도 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등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켜 국민화합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관동(關東)대학살에 대한 사료가 발굴되는 등 일본의 잔학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일본 정부는 학살 이후에도 합당한 조사와 처벌과 배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왜곡·은폐까지 하였다. 또한 광복 이후에도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관동대학살에 대한 합당한 조사와 처벌과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도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음.

○ 따라서 정부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그러나 한국 정부는 관동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음.

○ 그러므로 기존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7. 어린이 안전 기본 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어린이안전 기본법안(2001691)
소관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19.
대표발의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어린이안전 사고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어린이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어린이안전에 관한 현행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소관 부처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분산되어 있어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매년 국민안전처가 주관하여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소수의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높지 않음.

○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응급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2] 등 일

2)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17조의3(응급조치)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임.

○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함

○ 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내용에도 대부분 동의함. 다만, 제10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점이 아쉬움.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2002356)
소관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9. 20.
대표발의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이 법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둠.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추가함. ▪ 정부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서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건립, 교육자료 발간,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 ▪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함. ▪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선출하는 여당 2명, 야당 2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관련 단체가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함. ▪ 정부는 전년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문제일 뿐 아니라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 성폭력, 인신매매라는 역사상 최악의 여성인권침해 사건이며, 또한 피해자들의 고령의 나이와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를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 한편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회담으로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방적 타결을 선언하고, 최근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출범하여 피해자 등을 기만하려고 있는 상황임.

○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 다만, 현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률안이 8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입법안 처리과정에서의 통합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9.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2001599)
소관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16.
대표발의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진실정의위원회가 행하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헌정질서 파괴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으로 정함. ▪ 진실규명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진실정의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 진실정의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진실규명의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진실정의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함. ▪ 진실정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 진실정의위원회의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등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기간 제한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실정의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장준하선생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 독재 투쟁과 보수성을 감안할 때 입법안 발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됨.

○ 현재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과거사 문제라는 시각, 정파적 관점에 따른 이익의 측면에서 이를 조명하는 정치권 입장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 진실을 기억할 권리가 침해되고, 입법안이 사장되고 있음.

○ 입법안 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 거의 대동소이한 연유로 과거사법이 갖고 있는 한계 또한 그대로 갖고 있음.

○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의 한계는 가해자 처벌 문제, 수사권 인정 문제, 배상·보상 문제, 과거사재단 설립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할 수 있고, 입법안도 동일한 한계를 보유하고 있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평가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1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01753)
소관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23.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의 용이의 점>

- O 2014년 한 단체가 페이스북에 생일과 출신 학교를 공개한 11만 5615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만 2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음. 현재 도래한 빅데이터 시대에는 전문가 수준의 해킹 없이도, 민간 영역 기업들의 '정보 유출' 없이도, 이처럼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음
- O 주민등록번호의 핵심적 문제는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 영역의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내재된 체계 자체의 위험성이 있음
- O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1968년 최초의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나날이 발생하고 누적돼 가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개선 입법의 기회를 입법자에게 제공했음
- O 그럼에도 정부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수집・보관・이용을 제한하는 형태의 정책을 주로 추진했는데 이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음

<임의번호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 O 2015년 하버드 대학 정보프라이버시 연구실의 스위니 교수팀은 2가지의 암호해독 방법으로 처방 전에 암호화된 한국 주민등록번호 2만 3163개를 모두 성공적으로 알아내기도 했는데, 이 팀은 연구 결론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 검증번호 등이 없는 무작위 임의번호였다면 자신들이 해독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제시함
- O 그런데 최근 위 개정안에 대한 엉뚱한 공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바, 성 식별번호를 없애는 것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난이 그것"임. 현재 기독교 단체들 위주로 이러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국민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지도 않음
- O 2009년도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방안 인식조사에서 국민들의 77.2%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성별과 출생년월일, 출생지역 등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원하지 않는데도 내 정보가 노출되어서 신경이 쓰인다'고 응답한 사실이 있음
- O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00323) (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2000325)
소관상임위	(1) 안전행정위원회 (2)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6. 17. (2) 2016. 6. 17.
대표발의	(1) 김관영(국민의당) (2) 김관영(국민의당)
주요내용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00323) ▪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0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제9항 전단). (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2000325) ▪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지방자치에 있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을 낮추어 야 할 필요성은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 개정의 필요성과 동일함. 앞서 전술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404)에 대한 검토의견과 같음.

○ 이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00323)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2000325)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을 밝힘.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01402)
소관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4.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인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정당에 가입하고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정당가입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위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01402)의 기본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정당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현실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창구라는 점, 정당 가입 및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당이 청소년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라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정당 활동의 자유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01402)에 적극 찬성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XI. 여성가족위원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1773)
소관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24.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기본이념 추가(안 제1조의2 신설) ▪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용어 변경(안 제2조 제2호 등) ▪ 국가에 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보호책임 부여(안 제4조의8 신설) ▪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 마련(안 제7조의2 제3항 신설) ▪ 피해자 등의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금 지급(안 제7조의5 제1항 제4호의2 신설)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에게 입소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실시(안 제7조의6 신설) ▪ 보호시설 업무에서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 동행 규정 삭제(안 제8조 제1항 제4호 삭제) ▪ 비밀엄수의무자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안 제16조) ▪ 국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18조 제4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행위자’ 명칭을 ‘가해자’로 변경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 역시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항임.

○ 피해자 특성을 감안한 보호시설 세분화, 보호시설 직원의 조사, 증인신문 동행의무 삭제, 구상권 조항 삭제 등도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 방향임.

○ 민변의 「2016 한국사회 개혁과 입법과제」에서 요구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02289)
소관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일자	2016. 9. 12.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 반포, 임대, 판매, 제공 등 유포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의 정도를 강화함 (안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위 ‘리벤지 포르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임.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위 내용은 명백한 입법상 공백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

3. 약칭 ‘스토킹 처벌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00102) (2)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2002063)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002537) (4)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02641)
소관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6. 3. (2) 2016. 9. 2. (3) 2016. 9. 30. (4) 2016. 10. 13.
대표발의	(1) 남인순 (2) 김정훈 (3) 정춘숙 (4) 김삼화

주요내용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00102) 스토킹 행위(안 제2조 제1호)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안 제17조)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의무 규정(안 제4조), 법원의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규정(안 제8조), 전담조사제, 피해자 변호사 제도, 고용주의 불이익 처우 금지 등 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 (2)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2002063) 스토킹 행위(안 제2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안 제18조) 사법경찰관리의 임시조치 청구권 통보,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규정(안 제4조), 신변안전조치, 보호처분, 전담조사제 등 보호 규정 마련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002537) 스토킹 범죄(안 제2조 제1호)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안 제26조)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안 제4조) 임시조치, 신변안전조치, 전담조사제, 고용주의 불이익처분 금지 등 피해자 보호규정 마련 (4)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02641) 지속적 괴롭힘 범죄(안 제2조 제1호)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안 제22조) 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 피해자 지원조치 등 현장조치 규정(안 제4조 제1항), 법원의 잠정조치(안 제5조), 조서 등에서의 피해자 인적사항 생략, 피해자 변호사 제도, 고용주의 불이익 처우 금지, 피해자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규정 마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불과함. 따라서 이번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음.

○ 4개의 법률안이 상당 부분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일부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바, 전체적으로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대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공고 제2016-167호)
소관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일자	2016. 9. 7. 입법 예고
대표발의	정부(여성가족부)
주요내용	▪ 지원센터에 개인정보 연계 시 동의를 받는 주체에 청소년의 친권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제3항). ▪ 장기결석, 가출, 폭력 등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하나 친권자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청소년 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15조 제4항). ▪ 청소년 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연계한 경우, 정보의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방법을 청소년 또는 친권자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정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14. 5. 28. '학교밖청소년법'이 제정됨. 동 개정안 제15조 제 3항은 , 제4항은 친권자의 동의만으로 학교장, 단체장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도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15조 제3항의 경우 우선 순위나 조건도 없이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권한을 본인 외에 친권자등에게 병렬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음.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과는 달리 당사자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권리인데, 위 개정안대로라면 청소년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반대하더라도 친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헌법 제17조와 제10조, UN아동인권협약 제16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권을 청소년 본인 이외에 친권자등에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 그 동의권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겠다면 (1) 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본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 이외의 자에게 동의권을 인정하고, (2) 본인이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이외의 자의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3) '친권자등'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목적·대상·범위·기한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판결).

○ 개정안 제15조 제4항은 동의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하는 사유를 5가지 사유

로 제한하고는 있지만,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① 제3호와 같이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② 제4호에서 이미 청소년이 가출, 폭력 등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제5호에서 별도로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우려됨.

○ '2016 개정안' 제15조 제5항은 동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청소년 또는 친권자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후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사자에게 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정보를 바로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개인정보의 이동은 유출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명심해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01388)
소관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13.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5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예방과 차별금지를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차별금지 규정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 등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제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제10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3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 특히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양육지원과 체계의 미비로 인해 과거에는 미혼모 자녀 대다수가 국외로 입양되었고, 최근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양육보다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상황임. 미혼모자 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그와 동시에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처지임. 아동의 복지와 미혼모의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가족에 의한 양육과 미혼모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미혼모자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

XII. 외교통일위원회

1.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2001294)
소관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일자	2016. 07. 29.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되어 이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적용 범위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된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 보상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 당시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북한 지역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 전부와 일실이익 전부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연이자는 최대 3년까지로 함(안 제4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 손실보상 등(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 ▪ 기업과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취업알선, 생계비 지급 등을 긴급 지원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제2조 정의 및 제3조 적용범위조항에서 협력기업이나 근로자 등 피해자의 범위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들어가도록 해야 함. 정의조항에 협력기업이나 근로자를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이하 조항에서도 이를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협력기업이나 종사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포섭하여 법률 전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기업이나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종류와 범위,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어야 함.

○ 제9조 심리조사에 관한 권한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함.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해야한다.

○ 제13조와 위원의 제척사유와 관련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3조에 따르면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위원이 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에는 늘 참여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참여할 수 없는 회의의 범위를 정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 제3장 손실보상과 관련하여도 협력기업과 근로자를 포섭하여 이들이 입은 피해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통일위원회

XIII. 정무위원회

1.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2000025)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안일자	2016. 5. 30.
대표발의	김광림(새누리당)
주요내용	▪ 이 법의 적용범위를 행정부, 국회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되,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추진을 보장함(안 제3조·제4조 및 제5조). ▪ 규제의 원칙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함(안 제7조). ▪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규제개선(규제의 폐지·완화·적용방식의 변경·한시적 적용유예 등)과 규제에 대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16조). ▪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0조). ▪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규제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동 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임. 즉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규제비용총량제의 제한을 받게됨. (안 제3조, 안 제26조)

○ 규제개혁특별법안은 네거티브방식, 즉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안 제4조), 환경, 토지, 경제, 의료,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완화에 해당하고, 허용/불허의 범위가 불투명하여 자의적인 해석 및 임의적 행정재량이 지나치게 커지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 개발실패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게 되는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이는 곧 기업의 자유란 명목 아래 이를 제어해야 할 행정기능의 상실을 의미함. 최근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의 참사가 무분별하게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임.

- 동 특별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바, 이는 곧 규제개혁위원회 말을 안 들으면 직무감찰로 보복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로써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사실상 명령으로 기능하게 됨.
-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환경분야를 예로 들면,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임.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행정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함.
-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무불변한 규제완화법으로 소명되어 폐기된 법안이므로, 다시 발의될 이유가 없었음.
- 결국 규제개혁특별법은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의 품질의 제고하고 규제를 통합적·탄력적 관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며,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나, 실제로 필요한 규제인지 불필요한 규제인지는 실무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 안전성과 성숙도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변모하는 것이며, 국가경쟁력의 명목 아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므로, 동 법안의 입법목적은 전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폐기되어야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533)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안일자	2016. 06. 28.
대표발의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안 제7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삭제)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1조는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행위(같은 법 제66조, 제67조)에 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되(제1항),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게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3항, 제4항), 이러한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위원장이 고발하여야 하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규정.
- ㅇ 전속고발권 제도는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어 경쟁을 저해하고,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될 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가 가능하며, 불공정행위 피해자는 법원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있음.
- ㅇ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① 헌법 제124조가 예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고소, 고발권 행사를 통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권리, 즉 소비자기본권 내지 소비자권리의 보충적 근거규정인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② 재벌기업에 대하여는 공정위의 고발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반면 영세 중소기업체에 대한 고발조치는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정위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국민의 고소·고발권 행사를 통한 국가기관에 대한 사업자의 처벌요구권이 차별적으로 관철되고 있어 헌법 상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③ 공정위의 불고발조치로 검사의 형사소추가 제한되고 형사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경제범죄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 기회가 봉쇄되는 문제점이 발생.
- ㅇ 또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있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고자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등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결국 규범 상호 간의 모순과 갈등을 야기시켜 입법목적 실현에도 합치되지 아니함.
- ㅇ 따라서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함이 타당.
- ㅇ 아울러 같은 날 같은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5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5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5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541)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바, 위와 동일한 의견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XIV. 정보위원회

1.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2000032)
소관상임위	정보위원회
제안일자	2016. 5. 30.
대표발의	이철우(새누리당)
주요내용	▪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둠(안 제4조). ▪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둠(안 제6조). ▪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함(안 제7조). ▪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안 제10조). ▪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위협정보를 다른 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여야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함(안 제12조). ▪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책임기관의 장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피해복구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14조). ▪ 정부는 경계단계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책임기관 및 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 정부는 이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이버안보 전문업체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안 제16조). ▪ 정부는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기술개발·산업육성·인력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법 제정의 필요성 의문>

- ㅇ 법 제정 필요성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민간 부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공격 위협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 하다고 함.
- ㅇ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수차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효율적인 대처를 해 왔다고 자랑한 바 있음. 기존 정부 발표와 달리, 민관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법률 미비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국정원의 무분별한 권한확대>

- ㅇ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기존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 관련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된 것으로 기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명분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임.
- ㅇ 국정원의 권한을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영역의 일상적인 사이버보안까지 확장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국가 감시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음.
- ㅇ 또한 사이버보안 위협은 천재지변, 인재, 정보유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만을 언급하고 있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개념도 협소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도 모호함

<민간인 사찰 등의 악용가능성>

- ㅇ 입법예고 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음
- ㅇ 이들 단체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접근 할 수 있음
- ㅇ 또한 국정원에 대한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정원에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의혹을 부추길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XV. 환경노동위원회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2280)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6. 9. 7.
대표발의	이정미(정의당)
주요내용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함(제10조 제2호 삭제)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18개월간 180일에서 최근 3년간 180일로 변경해 구직급여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40조 제1항 제1호) ▪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고, 특히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차별을 폐지함(안 제50조 제1항).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를 완화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 제2호 가목) ▪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 중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실업자 중 요건을 갖춘 경우 최저기초일액의 50%를 1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로 청년구직촉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부족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실업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또한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장기실업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구직급여로서 생계가 힘든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

○ 그러므로 현행보다 더 폭넓고 실효성이 있는 실업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구직급여의 수급대상, 수급기간을 늘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 수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등에 대해 청년구직촉진급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29)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6. 5. 30.
대표발의	김성태(새누리당)
주요내용	▪ 현재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의 경우 실업급여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으나,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65세 이후 수급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 고용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토록 함 (안 제10조).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확대에 따라 기여요건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270일 이상으로 강화함(안 제40조). ▪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46조).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240일까지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연장함(안 별표 1). ▪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신설하고, 연장급여 지급수준을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단일화함(안 제51조 및 제54조). ▪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90일 이상 미취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개발 지시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지시 거부시 지급중단 등 조치를 강화함(안 제44조 및 제60조). ▪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함(안 제37조 및 제64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노사정 합의내용과 법 개정안 내용이 맞지 않음 : 합의안은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 법률안은 수급요건 강화, 하한선 인하

○ 수급요건 강화로 보호범위 축소 : 피보험기간만을 근거로 외국보다 '관대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자발적 이직만 보호하고 그 요건(구직활동 증명 등)도 지나치게 엄격하여 수급비율이나 보호범위가 절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을 간과

○ 하한액 인하로 취약계층 최저 보호 박탈 :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로 한 취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것 ; 상한선 인상, 하한선 인하로 분배의 공정성 악화 : 상한선 적용자가 27.7%, 하한선 적용자가 약 66.8% [5.5%는 급여가 오른 대신 3분의 2는

3) 위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2015. 9. 16.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16865)과 같은 내용임.

급여가 깎임]

- ‘급여 수급상의 사각지대’ 악화 : 기여조건 강화 →실업과 취업, 잦은 이직을 반복하는 상당수의 노동 시장 약자들이 제외됨 ; 급여수급기간 연장되더라도 대다수 수급자는 6개월 미만의 급여를 수급.
- 조기 재취업에 대한 적절한 대안 없는 폐지 :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실업 급여 수급일수를 남기고 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을 적립했다가, 또다시 실업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적용상의 사각지대(특수고용, 단시간, 가사근로자, 자영업자, 청년구직자 등)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 모두를 적용적용 제외하던 것을 도급 계약의 반복 체결에 한해 포함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없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3.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 근로자 개념 확대 등)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023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06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498)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6. 9. 21. 2016. 7. 4. 2016. 8. 9.
대표발의	이정미(정의당)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공통) 사용자 개념의 확대 ▪ (위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개념 확대 및 상시적 업무에서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정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사용자들이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발해 온 것이 사내하청 ·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임. 대법원은 2010년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노동행정기관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내 하청근로자와 원청사업주 등 간접고용관계의 당사자 간 직접 교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러므로 더 이상 사법적 구제에만 기대지 말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서 사용자의 개념을 입법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O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근로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음. 그러나 법원은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해왔고, 국제노동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므로 근로자의 경우도 더 이상 사법적 구제에만 기대지말고 입법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함.
- O 1990년대 시작된 노동유연화의 흐름과 함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 근로자들을 다양한 형태로 양산하여 왔음. 이는 헌법의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없이 확대되었고, 현재는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라고 불러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도래함. 그러므로 위 개정안과 같이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선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4)]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28)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6. 5. 30.
대표발의	김성태(새누리당)
주요내용	▪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임금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함.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4) 위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2015. 9. 16.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916864)과 같은 내용임.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3조제3항, 부칙). ▪ 현행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에 하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에 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가산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6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6개월로 각각 확대함(안 제51조). ▪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함(안 제57조). ▪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면서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되,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59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통상임금 정의 : 개념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그 범위를 "…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사실상 축소하고 있음.

○ 통상임금 제외금품 규정과 시행령 위임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금품은 위와 같이 기준만 정한 반면 '제외금품'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소송을 거쳐 법원의 인정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고, "무엇이 통상임금이 아닌가"라는 문제는 소송이 없더라도 법령에서 의심의 여지없도록 명백히 규정하게 되는 불평등·불합리를 초래

○ 통상임금 제외금품의 기준 :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이라고 하여 폭넓게 정하였을 뿐 아니라, 각각의 예시된 기준 역시 합리성이 없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제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예컨대 근로자의 건강, 노후 생활 보장,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성과급 역시 대법원 판결과 후속 하급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외하고 있음.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장시간 근로를 묵인하는 '특별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판례의 취지(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가족생활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보호, 고용창출 등)를 무시하고, 종래 잘못된 법해석에 근거하였던 '주 최대 68시간 근로'를 '주 60시간'으로 하였다며 이를 '단축'이라고 왜곡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은 종래 관행적으로 통용되었던 위법한 법해석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규모별 시행일까지 '주 68시간' 장시간 근로를 정당화하게 됨

○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가산 제한 : 기존 법률 해석상 지극히 자연스럽고, 종래 대부분의 학설과 상당수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해 왔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가산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잘못된 법 해석론에 따른 입법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 근로시간 단축에 역행하고, 법정 근로시간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폐지·축소되어야 마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오히려 확대함으로써, 단기간·고강도·장시간 노동을 양산하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00116)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00739)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01134)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6. 7. (2) 2016. 7. 7. (3) 2016. 7. 25.
대표발의	(1) 이인영(더불어민주당) (2) 노회찬(정의당) (3) 윤종오(무소속)
주요내용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계획, 경영상 이유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명시함. ▪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함. ▪ 해고근로자 우선재고용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① 근로자에게 해고를 당할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고, ② 일시적으로 다수의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케 하여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므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

- 현행법은 오직 실체적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해석은 법원에 맡겨진 바, 대법원은 '도산회피설'의 입장을 취하다가, 사용자측의 재량을 더 넓히는 '합리적 필요성설'로 확대하였고, 현재는 더 나아가서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의 경우까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포함된다고 하는 '감량경영설'을 취하고 있음. 즉,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왔음. 이는 법원에 입법의 권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범위 및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은 타당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헌법과 그 구체화로서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노동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노사간의 신뢰기반의 구축이 미진하고, 서구와 같은 유형의 노동의 경영참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 그러므로 성실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음. 위 개정안들은 '합의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완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나, 현행법의 추상적 표현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타당함.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규정의 문언 상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됨. 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규모에 따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요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법은 우선재고용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이 규정도 단순히 추상적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의 경우도 법에 명시하여 해석다툼의 여지를 없앴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적용범위 확대)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01572)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12.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11조).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9조 및 제63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자의적인 규정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됨. 또한 노사간 신뢰구축의 기반이 미진하고 고용보장 및 사회보장제도 등이 미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일부 근로자에게는 헌법적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또한 가사사용인과 사용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에서 설정한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음. 그러므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함.

○ 현행법은 운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위 제도는 특례업종에 대한 연장근로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사실상 무제한적인 근로를 부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들과 같이 운송업종 종사자에게 무리한 장시간 운행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그러므로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7.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01669)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01767)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8. 19. (2) 2016. 8. 23.
대표발의	(1) 김삼화(국민의당) (2)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01669) ▪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확인된 경우로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로부터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함(안 제14조제5항). ▪ 사업주로 하여금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의 중단이나 접근 금지를 요구하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4조의2).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01767) ▪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가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배치 전환·유급휴가 허가 등 조치를 하고,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 증언 등을 한 자에게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고객 등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 중단,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구,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일시적인 유급휴직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현재 발의된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동안 성희롱 구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제20대 국회에 대한 「2016개혁과 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성희롱 피해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방향도 제시하였음. 그 내용으로, ① 성희롱 피해 발생시 유급휴가 부여,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취할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것, ② 성희롱 피해 접수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를 명시하고 조사 내용 누설 금지, 임시분리조치 등을 통하여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성희롱 피해자 외 노동자가 신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하는 경우에도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여 보복조치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것, ④ 성희롱 신고 등을 이유로 한 금지되는 불리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행위의 규범력을 높일 것 등을 밝힌 바 있음.
- 김삼화 의원안과 권미혁 의원안은 다소 문언상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① 성희롱 피해가 확인된 경우 유급휴가 부여,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취할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성희롱 피해 신고 접수시 즉각적인 조사 또는 피해 사실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금지되는 불리한 조치의 내용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구체화하고 있는 점, ④ 고객 등의 의한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가 취할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에서 동일함.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금지되는 불리한 조치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고객 등의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에게 노력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방향임.
- 권미혁 의원안의 경우, ① 성희롱 피해가 확인되기 전에도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일시적인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점, ②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계속되는 접촉이나 조사 내용 누설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 김삼화 의원안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함.
- 김삼화 의원안에는 없으나, 권미혁 의원안에서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 증언 등을 한 자에게도 불리한 조치 금지를 규정한 것도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 성희롱 피해자를 도와주는 동료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역시 성희롱 피해자를 고립시켜 구제절차를 포기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조치가 금지되는 보호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권미혁 의원안에서 사업주 외 사업 경영 담당자 등도 사업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의 수범자를 확대하고자 하나, 간주 규정을 통하여 오히려 용어의 혼란을 가져올 뿐이며, '사용자'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빈곤과 여성노동팀)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 · 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 전면금지 등)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00105)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6. 6. 7.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유해 · 위험한 작업으로 도급인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함(안 제28조 제1항). ▪ 도급 사업주가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에 제23조 · 제24조에 따른 안전 · 보건 조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 · 위험물질 정보 제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대처 요령 등의 훈련을 추가함(안 제29조 제1항). ▪ 사업주가 중대재해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 · 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1조의 2) ▪ 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안 제66조의 2 제1항, 제67조의 2 제1호, 제68조 제2호). ▪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가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했을 때는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66조의 2 제2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발해 온 것이 사내하도급이고, 사내하도급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 · 보건조치의 무도 명확하지 않아 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유해 · 위험한 작업으로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함.

○ 또한 도급 사업주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에 제23조 ·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대처 요령 등의 훈련을 추가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의견임.

○ 그러나 도급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법 제51조의 2) 또는 벌칙(법 제70조) 규정으로 사후적인 제재만 있을 뿐임. 그러므로 도급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작업중지 요청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안전 ·

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므로 사업주가 중대재해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사업의 허가 · 면허의 취소 등을 요청하도록 하게 하고, 벌칙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안은 바람직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00110)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6. 6. 7.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함(안 제13조 제1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대해 규정된 시행령 제24조를 이법에 규정하고 원청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안 제18조 제3항). ▪ 제18조 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제29조 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함(안 제67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한 시행령 제24조를 이 법에 규정한 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의 범위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한 점은 바람직한 개정임. 실제로 수많은 요구에 의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자가 되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105, 한정애 의원)처럼, 원청사업주에게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책임을 직접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안전 · 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므로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안 제18조 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 보건시설의 설치 의무(안 제29조 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은 바람직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031)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6. 5. 30
대표발의	이완영(새누리당)
주요내용	▪ 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명시함(안 제2조의2 신설). ▪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종사하는 자, 뿌리산업 종사 업무에 대해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 ▪ 파견금지업무에 철도(도시철도 포함)사업의 여객운송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추가함(안 제5조제3항) ▪ 근로자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광범위한 파견 허용 업무 확대의 문제점: 고령자 파견은 현재도 파견기간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면 허용으로 갈 경우 평생파견이 될 것이고, 고소득 전문직 파견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 9개의 대분류 중 2개의 대분류에 해당할 만큼 광범위하고(세세분류 기준으로 볼 때는 현행 187개의 업무에서 고소득 전문직만 총 486개의 업무가 추가 허용되는 것임) 이에 대해서도 파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입법이 예상되므로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업무에 대한 평생파견이 추진되는 셈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 파견이 허용될 경우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그 대상은 약 741만명(전체 노동자의 39.5%)으로 추산(김유선, 2015)될만큼 문제적임

○ 사실상 제조업 파견 전면 허용에 해당하는 “뿌리산업” 파견 허용 : 사실상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주요 업종 대부분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현행 파견법이 금지하는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 ; 뿌리산업의 인력확보 방안은 이미 현행 뿌리산업법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하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와 관리를 했다면 이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인데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할 수 있음.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재벌의 청부입법

○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내용의 문제점 : 원청이 변경하기 쉽지 않은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당사자의 적격성과 관련된 징표들은 제외하고, 도급으로 가장하기 용이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자는 것으로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직간접적인, 상당한 지휘·명령”이라

5) 위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2015. 9. 16.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제출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6869)과 같은 내용임.

는 대법원 기준에 배치 - 원청이 '직접, 구체적으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작업배치·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거나 근태 및 징계권의 행사를 하는 등의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면 도급으로 볼 여지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및 장소의 지원, 고충처리, 작업장 안전지시 등을 근로자파견 징표에서 모두 배제하여 인정 범위 축소

O 안전 분야 파견근로 사용 제한은 긍정적이나, 유해·위험 업무의 외주화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되기에 미흡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